

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개정이유

- 여성회관이 소재한 토지에 대해 신 번지가 부여됨에 따라 위치에 관한 조문을 수정하고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감면 규정중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술교육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여성회관의 위치를 신번지가 부여됨에 따라 파주시 금촌동 952-4번지 일원으로 함.(안제3조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.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함. (안제7조)
- 사용료 및 수수료감면 조항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요보호대상자가 교육을 수강할 경우에는 기술교육에 한해 감면할 수 있도록 함. (안제7조)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-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.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에 있어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정함과,

- 여성회관의 위치를 신번지가 부여됨에 따라 파주시 금촌동 952-4번지 일원으로 정함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나. 내용타당성

- 동 개정조례안의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조항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모자복지법에 의한 요보호대상자가 교육을 수강할 경우 기술교육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능력을 배양하고 자립기반을 갖추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